

# 농 촌 진 흥 청

## 시 정 요 구

제 목 국내 육성 꿀벌 증식보급 시범사업 인건비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의령군

내 용

의령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밀력 우수계통의 양봉농가 보급으로 벌꿀생산성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2015년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2015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제7항에 따르면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함)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빙은 시장·군수 등이 해당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등)은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도 의령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5년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보급 시범사업(사업비 80백만원)을 추진하면서, 관련규정에도 집행할 수 없는 노무비(직접 노무비)를 소급 적용(2015년 6월~10월)하여, 2016년 1월 27일 10회로 나누어 5,778천원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관련 규정에 집행할 수 없는 노무비 5,778천원을 반환하시고,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